

「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2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3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12월 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보건사업과장 김남섭)

가. 제안이유

- 2013년 10월 4일 제정된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“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”는 규정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,
-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자격, 정원, 구성, 위임·해촉에 관한 사항,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(안 제7조제3항)
 - “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”의 규정 삭제

-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)
 -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함.
 -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함.
 -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에 따르도록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“자살예방·생명존중위원회”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자살예방·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·자문을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”로, “설치·운영 할”을 “둘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 및 홍보
3. 해당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
4.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
5.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.
-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.

1. 의사, 약사, 변호사, 종교지도자, 상담심리사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2. 군 소재 보건, 의료, 복지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임직원
 3. 평창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자문의
 4. 평창군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
 5. 군 소재 교육지원청, 경찰서,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
 6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1. 위원장 등의 직무
2. 회의의 소집통지, 의사·의결정족수, 공개·비공개 및 운영규정
3. 관계자·전문가 등의 의견청취
4. 위원의 임기, 위촉해제, 제척·기피 및 회피, 수당·여비 등 지급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